

의안번호	제 호
의 연 월 결 일 일 일	2015년 월 일

2016년도 세출예산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

제 출 자	구미시장
제출연월일	2015년 월 일

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

출연 계획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11. .

제안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
 - 출연 예정액 : 금51,519천원
 - 출연 필요성
 -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
 - 출연근거법령 : 지방세기본법 제145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3. 출연안 : 별첨

4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5. 관련법령 :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□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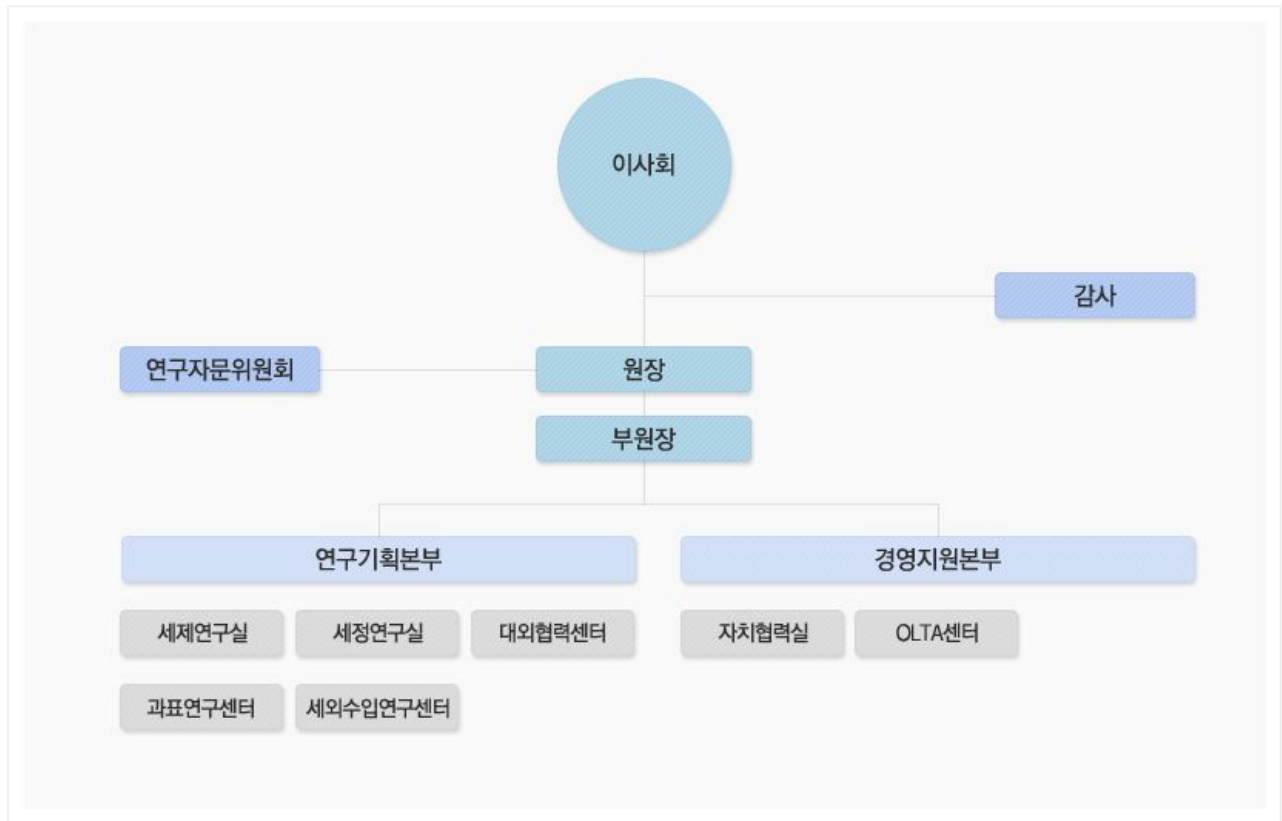
출자·출연 예 정 액	금51,519천원 ('15년 48,591천원, 전년대비 증 2,928천원)																			
출자·출연 기 관	○ 기 관 명 : 한국지방세연구원 ○ 대 표 : 허동훈 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-0																			
사 업 내 용																				
출자·출연 필 요 성	○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함																			
사업개요	○ 목적 및 필요성 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●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○ 출자·출연 개요 ● 연구원 운영 예산('15년 7,518백만원)중 96%가 지자체 출연금 ●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○ 산출기초 ● 출연액 : 51백만원 ● 전전년도 보통세의 1.5/10,000를 출연 - '14년 결산 보통세 : 343,458백만원 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 (단위 : 백만원) 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합 계</td><td>'11년</td><td>'12년</td><td>'13년</td><td>'14년</td><td>'15년</td></tr><tr><td>출연금</td><td>177</td><td>23</td><td>25</td><td>38</td><td>43</td><td>48</td></tr></table> ○ 기대효과 ●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●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						구 분	합 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출연금	177	23	25	38	43	48
구 분	합 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													
출연금	177	23	25	38	43	48														
근거·법령	○ 지방세기본법 제145조, 시행령 제114조 제145조 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																			
검토의견	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네트워크포럼 운영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 ○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.																			
소관부서	○ 세무과장 : 이 영 활 (480-6850)																			

□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

①기관명(주소) : 한국지방세연구원 (주소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-0			
②기관소개	○ 2011년 4월 개원 ○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 연구기관 ○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,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및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		
③설립근거	○ 법 률 :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· 조사 ·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·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		
④연 혁	○ 설립일자 : 2011. 2. 28 ○ 개원일자 : 2011. 4. 20 ○ 기관명칭 변경 : 해당없음	⑤관계기관	○ 행정자치부 ○ 243개 지방자치단체
⑥주요기능	○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· 조사 · 교육 ○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○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		
⑦기관장 소개	○ 성 명 : 허동훈 ○ 학 력 :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대학원		
⑧조 직 기구도	*별첨 참고		
⑨공시책임자	○ (공시담당자) (소속) 경영지원본부 (직책·성명) 주임 송형석 (전화) 02)2071-2723 ○ (확인자) (소속) 경영지원본부 (직책·성명) 본부장 심영택 (전화) 02)2071-2780		

[별첨] 한국지방세연구원 조직기구도

> 연구원 조직도



관 계 법 령

○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[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]

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○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<개정 2015. 7. 21. 행정자치부훈령 제 28 호>

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한국지역진흥재단,

한국지방세연구원,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

소관 실·과		세 무 과
입 안 자	담 당 관	이 영 활
	담 당	엄 기 득
	담 당 자	문 영 후 (480-6858)